

# —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—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5년 1월 18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4년 1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2005년 1월 26일

제9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 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이 재 응

나. 제안이유

- 근로자문화센터 부지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내 조성된 부지로써 우리시에서 매입하여 문화시설, 교육시설, 운동시설, 보육시설 등 근로자들의 이용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코자 함.
- 구미는 물론 한국의 자랑인 민족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 기본구상(안)에 따라 사업지구내의 제외 부지가 사업계획 지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[취득재산]

(근로자문화센터 예정부지 매입 )

- 추정가액 : 2,600,000천원(분양단가 기준)
- 대상토지 : 구미국가산업 제4단지 22블록  
대지 16,500m<sup>2</sup>(4,991평)

(박대통령기념사업 예정부지 매입)

〈예정부지 매입〉

- 추정가액 : 272,016천원(감정가격)
- 대상토지 : 3필지 2,008m<sup>2</sup> (607평)

〈건물 매입〉

- 추정가액 : 562,950천원(감정가격)
- 대상건물 : 13동 1,601.87m<sup>2</sup> (485평)

[처분(매각)재산]

〈건물 처분(매각)〉

- 추정가액 : 562,950천원(감정가격)
- 대상건물 : 13동 1,601.87m<sup>2</sup> (485평)

**라. 참고사항**

-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제78조, 같은법 시행령 제84조
-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, 제38조
-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

**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조택환**

- 지방재정법 및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2005년도 상반기 중에 시유지를 취득하고 처분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임.

- 따라서,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전방조종자동차는 종전과 같이 승합차 세율을 적용하고, 그 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50%를 경감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